

Research Paper

##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적용가능성

–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환경갈등 사례연구 –

홍 상 표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 Feasibilit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Instrument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 Case Study: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

Sang-Pyo Ho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환경분쟁, 환경소송, 공중의견 수렴, Aarhus 협약

**Abstract** :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have still now continued from 1985. As a case study,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and the feasibility of EIA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 for solving the conflict of 'Mungjangdae Hot Spring Development Project' was analysed.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flicts,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participation in EIA process which is democratic procedure based on scientific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need to be diversified to the extent 'Aarhus Convention', and the burden of environmental litigation need to be alleviated by the 'EIA consultation' from environmental authorities.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with large scale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which have enormous impact, the effectiveness of the EIA as ADR can be enhanced by applying citizen involvement in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the various aspects of sustainability.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IA public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hearing to pursue social equity can be a ESSD scheme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 at regional dimension in Korea.

Keywords : Environmental Dispute, Environmental Lawsuit, Public Participation, Aarhus Convention

## I. 서론

환경갈등은 시대상황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서 절차적, 가치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정보관계, 감성관계의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Ryu & Cho 2013).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환경갈등(environmental conflicts)도 급증해 오고 있다(Lim 2016).

인간은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환경권(environmental right)’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법적구제로써 손해배상청구, 공사중지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상의 구제와, 행정소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일반 행정구제법상의 권리구제 제도를 비롯하여 헌법소원, 청원 등 각종의 공법상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침해로 인한 환경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법적 절차나 환경행정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억제,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Hong 2010).

환경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한계로, 이를 보완할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 ADR)’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ADR의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과 공공재(public goods)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로 함축되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특성으로 초래되는 환경갈등을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 특히 환경협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환경갈등이 촉발된다. 환경적 가치는 경제개발과 균형있게 고려

되어야 하는데, EIA 제도는 지역주민, 행정당국,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참여적 협치(participative governance)를 통하여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확립될 수 있다. EIA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국가정책이나 사업과정에서 빈발하는 환경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함에 EIA의 공정성과 과학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IA를 연계시킨 국내의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갈등 해결을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Ye & Hong 1997), 환경갈등의 예방을 위한 EIA제도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다룬 연구(Yun 2004), 환경갈등 완화를 위한 EIA제도의 역할을 정보비대칭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Ryu & Cho 2013),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적 해결수단으로 징벌적 배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Park 2013)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EIA제도에 지속가능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국제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EIA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연구(Hong 2011; Hong 2016; Lee et al, 2017), EIA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Hong 2010), EIA에 관련된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내용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2), 우리나라의 EIA 제도가 규제적 성격의 협의제도에서 개발사업자의 계획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형 도구로 개선될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Kim 2012), 환경관련 행정소송에서 EIA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원고격적 확대에 관한 연구(Song 2013), EIA 절차의 하자과 승인처분의 위법성

에 관련된 법원 판례를 분석한 연구(Kim 2015) 등이 있었으나 ADR 차원의 EIA 역할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DR 차원의 EIA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30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되어 지역간 환경분쟁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의 환경갈등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법부의 판례분석 및 관계법규 검토, 그리고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등의 협의내용 및 환경갈등과 EIA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EIA(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포괄하는 개념)가 지역주민간의 환경분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안정성을 포괄하는 소통적 협치(communicative governance)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SDG)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써 EIA를 ADR 관점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지역간 환경분쟁 전개과정에서 법률적 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사결정 지원형 도구인 EIA의 역할과 적용가능성을 환경갈등 해결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 II.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환경갈등

### 1. 온천지구 개발 관련법규와 환경갈등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서는 온천을 용출상태에서 수온이 25℃ 이상으로 수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수량이 1일 적정 양수량 기준으로 300톤 이상이면 온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하수는 지열(geothermal heat)의 영향으로 지하심도가 깊어지면 『온천법』 온도규정에 적합하게 되어 온천지구의 지정과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온천폐수의 부적절한 처리에 의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2012년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온천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EIA) 또는 EIA를 요청하여야 한다. 온천지구 개발이 30만m<sup>2</sup>를 초과하면 EIA를, 30만m<sup>2</sup>를 미달하면 SEIA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 받아야 한다.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변여건, 수요전망 및 개발방향,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 등이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용도 변경에서는 도시지역은 유원지시설 결정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자연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로 용도 변경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 조성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온천원 부존지역이 온천지구로 지정받으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온천법』 제2조의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용존물질의 함량, 부존량, 채수가능량 및 하루 용출 가능량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없이 온도 기준만으로 온천을 정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조장하여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인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라고 2004년 6월에 경상북도 울진군수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08).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온천으로서 개발하고 보호할 것인지는 지리적·지질학적 특성, 수자

원의 현황, 온천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온천법』은 온천을 국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재량권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온천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문제로 결정하였다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08).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간 환경분쟁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온천법』 등 관련법의 개정, 행정구역의 조정과 수계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Youn 2004).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문장대 온천’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충청북도 보은군 및 괴산군 권역에 속하므로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계관리 차원에서는 문장대 온천지구가 신월천-달천-남한강-한강으로 연결되는 한강 수계로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관할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할로 되어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 2.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환경갈등

환경갈등은 비가역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갈등이 첨예하며 장기화 된다는 특성을 가지므로 갈등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EIA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은 정부의 국책사업, 특히 혐오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발생하며, 다른 공공갈등보다 시민단체의 참여 비율이 월등하게 높으며, 갈등의 평균 지속일수도 가장 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Han 2016).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기술집약적 산업사회로 변화된 만큼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환경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Lim 2016). 개발과 보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비용과 편익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배분된다는 데서 환경갈등이 기인된다.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도 지역적 차원에서는 사회·환경적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편익과 비용의 부담 정도가 다르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비용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환경갈등을 초래한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역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1985년 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온천관광지구로 대규모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충청북도 괴산군과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문장대 온천’ 지구를 적극적으로 개발추진 하였고, 토지 소유자로 결성된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배후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의해 추진되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에 반발하여 ‘문장대 온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괴산군 주민에 호응하여 충청북도와 비정부 시민단체 (Non-Government Organization : NGO) 등이 가세하여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면서 지역간 환경분쟁으로 비화하게 되었다(Ye & Hong 1997).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저지 대책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헌법소원, 행정소송 제소, 행정심판 청구, 공사중지 가치분 신청 등 각종 법률적 조치를 주도하였다(Promotion Committee for Deterrence on Mungjangdae-Yongwha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2003).

1985년 2월에 경상북도청은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중벌리 및 운흥리 일대 530만m<sup>2</sup>를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하였고, 1987년 11월에 교통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하였다. 1988년 10월에는 ‘EIA 협의’ 과정 절차를 거쳐서, 1989년 7월에

교통부는 956,000m<sup>2</sup>에 대해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1991년 6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 ‘문장대 온천 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였다(Supreme Court 2009).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는 1994년 8월에 ‘속리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상주시장은 1996년 4월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을 하였고,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는 1996년 8월에 134,920m<sup>2</sup>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하였다(Lim 1997; Ye & Hong 1997).

이에 대하여 ‘문장대 온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은 1996년 8월에 ‘문장대 관광온천 개발지구 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997년 2월에 취소청구를 재결하였고, 청구지방법원에서는 1998년 2월에 ‘공사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1998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협의’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신청하였고, 상주시에서는 1998년 5월에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변경’을 허가하였다(Supreme Court 2009).

대법원에서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 1999.7.16. 선고 98누2226 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은 2003.2.7. 선고 2001누1759호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와 참가인(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3두 25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3.5.30에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판결하였다(Supreme Court 2009).

그러나 상주시에서는 2004년 7월에 사업구역 일부 조정한 956,000m<sup>2</sup>에 대한 폐수처리 공법을 변

경하여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변경 하였다. 그러자 괴산군에서는 2005년 1월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 취소와 시행허가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0월에 대법원에서는 또 다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다(Supreme Court 2009).

2회에 걸친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처분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에서는 956,000m<sup>2</sup>에 대하여 2013년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을 제출하였고, 2015년 6월에 사업구역 일부 변경하여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협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환경청은 2015년 8월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료 부족이라는 내용적 하자 와 괴산군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협의의견 ‘반려’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에서는 2016년 5월에 EIA 공람 절차, 2016년 11월에 EIA 공청회 절차를 추진하며 경상북도 상주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의 지역간 환경분쟁은 여전히 환경갈등 양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 III.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

#### 1.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일반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라 함은 소송절차인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소송외적 절차를 의미한다. ADR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재판외 분쟁처리제도’, ‘소송대체 분쟁해결제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려는 절차로 볼 수 있다(Lee 2006).

ADR은 소송, 조정(arbitration), 중재(mediation) 보다는 협상(negotiation)에 가까워 좀 더 비공식적이며, 상호합의적이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성이 완화

되어 법률이나 심판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판정되지 않는 분쟁당사자 사이의 상생적(win-win) 해법이다. ADR은 법률소송 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여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전문가, 기타 이해당사자 및 법정 조언자(amici curiae)를 포함시킬 수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UNEP 2016).

ADR은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에 관련된 당사자가 그들 자신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최종 결정에 도달하는 데에 최적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차이점을 토의하고 논란이 되는 문제를 집단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게 된다. ADR은 자원배분, 정책 우선순위 결정, 관할범위 설정, 환경기준 설정 등에 관련된 갈등을 다루어 왔다(Lawrence 2003). ADR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독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ADR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Kim 2010).

환경분쟁은 가해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및 피해액수 산정이 곤란하고, 피해구제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성 때문에 통상의 소송절차는 분쟁 해결에 만족스럽지 못하여 ADR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Cho 2006). 개발과 환경문제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EIA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집행과정상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정책의 본래적 목표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개발의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는 실정에 있다(Kang 1997). 사전배려의 원칙 또는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doctrine)에 토대를 둔 EIA에 참여하는 각종 이해집단 간에 대안 및 환경상 악영향 저감대책의 제시를 통하여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주민의 환경적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환경갈등의 사전예방적 조정을 환경규범으로 규정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이익과 침해라는 불확실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을 포함하게 된다. 사법부는 행정기관이 환경규범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환경행정의 적법성을 판결함으로써 환경분쟁 해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ADR은 기존의 행정절차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률적 소송 없이 갈등을 회피, 완화 및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법원판결, 법규제정, 정책개발, 규정집행, 허가처분, EIA 등 다양한 상황에 활용되어 왔다(Hammond & Markell 2013).

ADR은 EIA 초기단계에 적용하면 환경갈등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DR은 EIA에서 대안평가, 평가범위 설정(scoping), 환경영향의 중요도 같은 환경가치의 상대적 가중치 결정 같은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다. ADR을 EIA의 여러 단계에서 적합하게 활용하면 공청회 등 주민참여 과정에서 환경갈등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US EPA 2001). 그러나 EIA의 주민참여 절차에서 ADR의 잠재적 가치가 높지만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확인하는 것과 ADR이 실패할 경우에 초래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강력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Sinclair & Diduck 2016).

## 2.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분쟁에 관련된 사법부의 판례 분석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환경갈등의 근본 원인이 수질오염으로 촉발되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 사이의 환경가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의 편차, 부족한 환경자원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등에 기인된다. 개발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지구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남한강 상류지역인 경상북도 상주시와 온천폐수로 피해를 보게 될 하류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지역사회간의 환경갈등이다.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및 용화리 일대는 1985년 온천지구로 지정받고, 온천 조성사업을 시행

하였으나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온천 개발허가 취소 판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2004년 7월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 지주조합’에게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법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다시 처분하였다. 괴산군에서는 2005년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2006년 ‘괴산군 저지대책위’가 1심 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다.

1심 법원 승소판결 이유로는, 남한강의 최상류 발원지로 수질환경기준 1등급 지역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한강수계 관리에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고, 오수처리공법의 온천오수에 대한 처리효율 자료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가 사업주체와 행락객들이 갖게 될 이익을 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2009년 5월 대구고등법원은 피고 상주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09년 10월 대법원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상고를 기각하여(Kwon 2012) 괴산군 주민의 승소로 귀결되었다. 지역간 환경분쟁은 법률소송으로 진전되었고 결국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대규모의 관광지를 조성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주민들의 환경이익이나 생활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지 조성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Supreme Court 2009).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의 근거법률이 되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들의 취지가 환경공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EIA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受忍限度 : bearable pain)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식수원 및 농업용수원을 확보, 사용할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신월리, 상신리에 거주하는 신월천변 지역주민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원고적격(原告適

格 : standing to sue)’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Daegu High Court 2003).

대법원은 ‘EIA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EIA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는 환경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함으로써 ‘EIA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헌법』상 환경권 규정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Song 2013).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EIA 대상지역’을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EIA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EIA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적절한 ‘EIA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EIA 대상이 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Lee et al. 2012).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은 환경침해로 인한 신체의 피해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피해 등으로써 그러한 피해를 예방 및 제거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원은 ‘원고적격’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Kim 2015). ‘EIA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은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EIA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주체는 당해 EIA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는 사업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가 정한 대상지역 범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그 적정성을 판단하게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ee & Lee 2012).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EIA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EIA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EIA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

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 EIA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EIA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EIA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뒀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Supreme Court 2006)라는 판결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적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분쟁 사건의 근거법률이 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EIA 제도가 환경분쟁의 ADR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갈등 완화

EIA의 보다 본질적인 기능은 환경침해 요인을 갖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관계인들을 참여시켜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EIA는 분쟁발생 요인이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예방, 협의, 조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분쟁 사전 예방형 기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Park 2013).

EIA 제도는 규제수단으로써 그 직접적인 구속력이나 강도 면에서는 환경정책적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지만, 그 대상사업의 승인처분을 다룰 수 있는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여하나 의견수렴과 같은 행정절차 요건의 준수 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고, 또 ‘EIA 대상지역’ 주민들과의 분쟁해결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Hong 2010).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환경갈등의 경우에 명확하게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환경갈등의 완화 또는 해소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형성의 구도로서 EIA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Lee 2006).

자연환경은 그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구조와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IA에 지역사회의 의사가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각 지역

의 환경적 특성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회구조와 기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 제안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Yun 2004). EIA 제도는 환경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논의되었던 주민참여, 정보공개, 제3의 독립기구화의 요소를 법률적 절차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환경갈등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다(Kim 2016).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연구에서는 2회에 걸친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개발사업자의 집요한 개발이익 추구행위에 기인되는 지역간 환경분쟁을 ADR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기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평가기관의 검토를 반영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환경갈등 해결에 환경부의 ‘EIA 협의과정’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보전 방안의 대안 설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사업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통합적 거버넌스를 내실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다음의 일련의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에 의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ADR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토지이용 구상안, 평가대상지역 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이해당사자의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 셋째, 대상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상



지역의 설정, 환경보전 방안의 대안 설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심의하여 환경가치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및 반력을 포함한 협의의견을 사업승인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ADR 차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연구에서도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2015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료 부족이라는 내용적 하자 와 피산군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협의의견 '반려' 결정을 내려서 지역주민 사이의 환경분쟁이 법률적 소송으로 재연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여 ADR 차원의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였다. 또한, 2012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온천에 관련된 정책계획으로 '온천 발전종합계획', 개발기본계획으로 '온천 개발계획' 및 '온천공보호지구 지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생태적 수용능력 등의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2012년 이전에 추진되었던 '문장대 온천'의 경우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체제에서는 환경갈등이 미연에 예방되었을 가능성이 ADR 차원에서 부각된다.

이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IA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갈등 요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된다.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EIA작성 대행업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환경 컨설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사업의 친환경설계를 유도하는 것이 통합적 거버넌스를 강조한 의사결정지원형 EIA로 근접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공중참여(public participation)를 기반으로 환경적, 사회적 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개발사업

의 승인기관과 사업자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2005년에 발효된 'Aarhus 협약'에서는 EIA 과정에 공중참여를 명문화시켰으며 '공중(public)'의 범위를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는 공중(public concerned)'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어, 환경보전 개선을 취지로 하는 NGO도 '공중'으로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Tromans 2012). 유럽연합의 폭 넓은 '공중' 범위 설정은 생태공동체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다는 취지에서 '국제연합(United Nations) 2030 Agenda' SDG의 하나인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체의식(partnership for the goals)' 구현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2012년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대상 지역주민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여 공중의견 수렴 범위를 선진국의 추세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 거버넌스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구환경문제가 최초로 논의된 이래 '지속가능한 발전(SD : Sustainable Development)'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다(Jeong 2008). 우리나라에서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SD원칙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토대로 한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들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가치의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과 개발의 실천적 통합, 환경혜택의 향유에 있어 사회적 형평 및 세대 간 형평으로 집약된다(Hong 2013).

SDG 원칙과 연계되는 EIA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관계당사자의 상호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ADR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성취가 요구된다. 지역간 환경분쟁 해결은 SD이념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과제이다. 주민참여 범위확대 같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EIA 제도는 환경갈등 해결을 포함하는 지역차원의 SD를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 확립될 수 있다.

#### IV. 결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5년에 경상북도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법률적 소송의 진행과정과 EIA 제도가 ADR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003년과 2009년의 2회에 걸친 대법원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는 재산권 행사 및 경제적 가치 추구 행위를 지속하였고, 지역주민은 환경권 수호 차원에서 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환경분쟁은 2017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의 과학적 사전예측을 통하여 사회갈등·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EIA 협의의견’의 제시가 법률소송의 폐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ADR 차원의 해결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단계에서는 주민대표 등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규정하여 ADR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사

례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료 부족이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적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괴산군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족이라는 EIA의 절차적 결함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협의의견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조치는 지역환경분쟁이 법률소송적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완화하여 ADR 차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EIA 협의’ 제도의 긍정적 사례로 판단된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갈등 사례연구에서 고찰되었듯이, 과학적 예측기법과 민주적 절차를 통합한 EIA제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시킨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궁극적으로는 SDG 실행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을 통한 민주적 공중의견 수렴 및 과학적 예측기법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지속가능한 발전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통합·경제효율·생태안정 관점에서의 SD이념을 지역차원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유용한 환경정책 도구이다.

#### 謝辭

본 논문은 2016~2017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 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References

- Cho HS. 2006. Economic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Focused o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Comparative Private Law. 13(1): 90. [Korean Literature]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08. Constitutional Appeal on Article2 in 『Hot Spring Act』. 2004 Heon-Ba 44. [Korean Literature]

- Daegu High Court. 2003. Case 2001 Nu 1759 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Korean Literature]
- Daegu High Court. 2009. Case 2006 Nu 2092 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Korean Literature]
- Hammond E, Markell DL. 2013. Administrative Proxies for Judicial Review : Building Legitimacy from the Inside-out. *Harvard Environmental Law Review*. 37: 313-320.
- Han AR. 2016. A Study on Environmental Confli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Yesan New Material General Industrial Complex, Donghwa Incinerator. Master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2. [Korean Literature]
- Hong JH. 2010. Legal Issue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Administrative Law Research*. Korea Administrative Law Institute. 28 : 209-230. [Korean Literature]
- Hong JH. 2013. Special Lectures on Environmental Laws. Pakyoungsa; p.20-21. [Korean Literature]
- Hong SP. 2011. 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3) : 269-279. [Korean Literature]
- Hong SP. 2016. Implication Measures betwee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5(1): 63-76. [Korean Literature]
- Jeong HS. 2008. Environmental Change, Human Civi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47: 19-20. [Korean Literature]
- Kang SR. 199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h.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p.135-145. [Korean Literature]
- Kim BM. 2016. A Study on the Operation Mechanism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 with a Focus on the Effects of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p.43 [Korean Literature]
- Kim EJ. 2015.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 Focused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Significant Supreme Court Cases.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13(3): 5-28. [Korean Literature]
- Kim SC. 2010. The Civil Remedies for the Environmental Invasions. Ph.D.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p. 119-121. [Korean Literature]
- Kim SW. 2012. Meta-evalu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ational Assembly of Budget Office; p. 54. [Korean Literature]
- Kim TH, Shin YG. 2000. Comparative Studies on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Phytoplankton and Periphyton Communities in the Shinwol Stream and the Seokmoondong Stream. *Environmental Science Review*. Sangji University. 6(1) : 1-12. [Korean Literature]
- Kwon KT. 2012. A Study on the Groundwater

- Use and Development from a International Legal Point of View.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p.101-102. [Korean Literature]
- Lawrence DP. 200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ractical Solutions to Recurrent Problems. John Wiley & Sons; p.355-364.
- Lee JU. 2006.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p.226. [Korean Literature]
- Lee YJ, Moon NK, Ha JS, Lee MJ, Kim KH, Park JH. 2017. Korea's Environmental Assessment Strategies for Sustainable Societ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15. [Korean Literature]
- Lee YS, Choi JK, Cho GJ, Han SW, Lee YS. 2012.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ime to Reduce Environmental Conflict-Approach through Lawsuit Case Analysis.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91. [Korean Literature]
- Lee YS, Lee YS. 2012.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lated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nvironment Forum.;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6(5): 1-12. [Korean Literature]
- Lim JH. 2016. A Study on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onflicts in South Korea.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Dankook University. 14(2): 109-136. [Korean Literature]
- Lim SS. 1997. A Case Study of Regional Conflict: Focused on Mungjangdae·Yongwha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Master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Korean Literature]
- Park CS. 2013. A Study on the Advanced Prevention Program in Environmental Dispute-Focused on the Punitive Damages-. Hanyang Law Review. Hanyang Law Association. 24(2): 208. [Korean Literature]
- Promotion Committee for Deterrence on Mungjangdae·Yongwha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2003. A White Book (the Last Volume): Deterrence on Mungjangdae·Yongwha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p.861-914. [Korean Literature]
- Ryu BR, Cho HK. 2013. A Study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 With a Focus on Information Dynamic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25(3): 847-877. [Korean Literature]
- Sinclair AJ, Diduck AP. 2017. Reconceptualizing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ssessment as EA Civics.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Review. 62: 174-182.
- Song JB. 2013. A Study on the Expansion of Standing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nd introduction of Verbandsklage and Class Action.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p.42. [Korean Literature]
- Supreme Court. 2001. Declaration 99 Da 53001 Adjudication. 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Korean Literature]
- Supreme Court. 2006. Declaration 2006 Du 330 Adjudication. 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Korean Literature]
- Supreme Court. 2009. Declaration 2009 Du 10673

- Adjudication. Revocation of Enforcement Sanction on Hot Spring Tourism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Korean Literature]
- Tromans S. 201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loomsbury Professional Ltd; p.29-33.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16. Environmental Courts & Tribunals - A Guide for Policy Makers; p.47.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2001. Stakeholder Involvement and Public Participation at the US EPA : Lessons Learned, Barriers and Innovative Approaches.
- Ye KH, Hong YH. 1997. The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Conflicts in the Regional Development: Focused on Mungjangdae·Yonghwa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11(1): 131-159. [Korean Literature]
- Youn OS. 2004.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in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rocess : Focusing on 4th National Comprehensive Territorial Plan. Ph.D.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p. 240-243. [Korean Literature]
- Yun SJ. 2004.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Prevent, Mitigate and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Involved Social Impact Assess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5(1): 283-311. [Korean Literature]